

##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·운영계획 (변경)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|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 | 접수일                      | 처리기간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신고인                      | 성명(명칭)                   | 생년월일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자 성명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장 소재지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|      |
| 포집시설의<br>세부내용            | 설치 부지 위치                 | 설치 부지 면적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포집 설비 용량                 | 포집 방식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포집 형태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변경내용<br>(변경신고의<br>경우 작성)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| 변경 전               | 변경 후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포집시설<br>위치·면적 등<br>설치 부지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포집시설<br>용량·포집방식<br>등 설비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
「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·운영계획 [ ]신고 [ ]변경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###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신고인<br>제출서류    | 1. 신고의 경우: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·운영계획서 1부<br>2. 변경신고의 경우: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| 수수료<br><br>없음 |
| 담당 공무원<br>확인사항 | 1. 사업자등록증명<br>2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
#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\* 담당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